

종합감사

감사보고서

-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종합감사 -

2024. 12.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0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0
1. 일반 현황	0
2. 예산 현황	0
III.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0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 관리 미흡	0
2. 공모주 직접투자 부적절	0
3. 해외채권 직접투자 운영 및 사후관리 부적절	0
4. ETF 주식 투자·관리 부적절	0
5.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운영 미흡	0
6. 중기간 경쟁입찰 적격조합 사후관리 부적절	0
7. 해외사무소 방치 부적절	0
8. 퇴직금 가산 지급 관련 규정 부재	0

9.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부적정 0

10.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0

IV. 처분 요약 0

I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주기능 수행, 기관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계약 등 기관운영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관리 등 중앙회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4. 6. 17.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1차 감사는 6. 27.부터 7. 19.까지, 2차 감사는 8. 29.부터 9. 11.까지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시하였고, 이후 10. 10.부터 10. 23.까지 소수인원이 투입된 보완감사 과정을 거쳐 실지감사를 완료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4. 11. 25.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1962. 5. 14. 설립된 기관으로서 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에 대한 기획,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운용, 공제자산 등에 대한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현황

중소기업중앙회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1단, 7본부, 36실(국, 연구소), 13팀, 15 지역본부, 3 공제센터, 1 해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인력 현황

2024년 6월 말 기준 총정원은 임원 11명을 포함하여 총 382명이다

2. 예산 현황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예산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4년 기준 7조 7,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특별회계가 6조 8,838억 원으로 88.3%를 차지한다.

Ⅲ. 감사 결과

Ⅲ-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노란우산공제) 관리 미흡

1. 업무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이하 “공제”라고 한다)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중앙회가 위 절차에 따라 처리한 공제계약 건수 및 부금액 규모는 2,852,589건 / 36조2,033억 원인데, 이 중 1,093,488건 / 9조 5,708억 원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759,101건 / 26조6,325억 원에 대해서는 공제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회는 매 분기 자산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제 기준이율(이하 “공제이율”이라 한다)을 정함과 아울러 이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공제이율은 약 176만 공제계약자들의 공제부금 이자 등 산출 시 일괄 적용된다.

2. 분야별 법령 등 관련 근거 및 검토결과와 문제점

2-1. 공제 홍보 및 가입 분야

가. 공제상담사 온라인홍보 관리 미흡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촉진관리요령」(이하 “가입촉진관리요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제상담사는 고객에게 자신의 직무상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중앙회 및 공제와 관련된 일체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본부 가입 담당 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공제상담사 온라인 영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는 공제상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제상담사 온라인 영업 가이드라인

I. 해당 콘텐츠의 게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안내

- 웹사이트 운영 주체 명시
 - 웹사이트 이름에 공제상담사 이름 명시
 - 웹사이트 메인화면 공제상담사 이름/코드 명시
 - (예시) 노란우산공제 공제상담사 000 (코드:8100000)
- 별도 전화번호 게시하는 경우 하(상)단에 주체 명시
 - 웹사이트 이름에 공제상담사 이름 명시
 - (예시) 1566-0000, 공제상담사 홍길동(코드:8100000)

IV. 기타

- 본회 BI 정책 준수
 - 변경된 BI 및 캐릭터 사용 및 BI 사용 관련 규정 준수

자료 : 공제상담사 온라인 영업 가이드라인 내용 일부 발췌

따라서 공제상담사는 가입촉진관리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제상담사 개인 홈페이지에 공제사업 관련 홍보물을 게시할 때에는 중앙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제상담사 개인 홈페이지를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일 등이 없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검토결과와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공제상담사 7명을 확인한 결과, 3명은 중앙회의 사전 승인 없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4명은 사전 승인은 받았으나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4명은 네이버 등 웹 사이트 링크에 공제상담사 이름을 표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공제상담사 코드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사전 승인 없이 홈페이지를 운영한 3명은 규격에 벗어난 BI(brand identity)를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해당 홈페이지가 공제상담사 개별 홈페이지인지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인지조차 식별하기 어렵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회는 이를 이번 감사 과정에서야 인지하는 등 공제상담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제 가입 시 공제상담사 개인 홈페이지를 중앙회 공식 홈페이지로 혼동하고 가입하여, 공제상담사들에게 가입유치 수수료가 불필요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공제 BI 등이 일관성 없이 사용되어 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나. 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 부적정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중앙회가 청약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약서의 기재 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계약 자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인 경우에 청약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요강」(이하 “운용요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후, 계약 청약일 당시 ①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②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③ 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보아 해지하며 납부한 부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중앙회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절하지 않았다면, 공제 원금(납입부금)에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한 뒤 공제 해지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는 운용요강에 따라 가입 무효 처리 후 공제계약자가 기존에 납부한 공제부금을 반환하는데, 이 경우 중앙회가 가입심사 당시 무효 사유를 알 수 있었다면 기존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하므로, 중앙회는 자격이 없는 자가 공제에 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가입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기존 공제계약자에 대한 적격 여부 또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신속히 무효 처리하여야 한다.

[검토결과와 문제점]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제계약자에 대한 무효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앙회는 총 384건의 무효 처리건 중 52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을 개업일로 오인하거나 업종을 오인하여 가입을 승인해 주는 등 중앙회 귀책 사유로 인해 공제계약자들에게 납부한 기존 공제부금 이외에도 총 1,351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⁵⁾

뿐만 아니라 중앙회는 위 384건 중 118건의 경우에는 공제계약자 귀책 사유로 무효 처리되어 이자(1,544만 원)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를 지급하는 등 총 1,562만 원의 이자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무효 처리가 지연될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바 이에 그간의 무효 처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들이 해지를 신청한 후에야 해당건에 대해 무효 처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아직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약 176만 건에도 무효 처리 대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있었다.⁶⁾

이와 관련 이번 감사기간 중 위 176만 건을 대상으로 전산(공제시스템)에 “유홍”, “마사지”, “노래” 등 제한업종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여 추출된 일부

5) 한편, 중앙회 귀책 사유로 무효 처리된 또 다른 8건의 경우 공제계약자들에게 이자(18만 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6) 무효 처리 대상을 신속히 발견·처리해야 하는데도 위 건들에 대해 최장 3,248일이 지나고 나서야 발견·처리하는 등 업무 처리 지체

계약 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유흥주점 16건, 마사지업 15건, 비영리단체 3건 등 총 34건이 무효 처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중앙회는 위 계약 건들에 대해 최단 723일에서 최장 4,276일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무효 처리 없이 방치해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무효 처리 대상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한 결과, 위 418건⁷⁾ 중 94%에 해당하는 395건을 공제상담사 및 금융기관이 가입 유치하였는데 이들은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공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관련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잘못 입력하여 중앙회에 가입심사를 요청하는 등 대부분의 무효 처리 대상 건이 공제상담사 및 금융기관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2-2. 공제사업 운영 관리 분야

다. 공제부금 12회 이상 장기미납자 처리 관련

1) 공제부금 장기미납자 관리 미흡

[법령 등 관련 근거]

운용요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자가 사업경영의 악화 등을 사유로 부금 월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중앙회는 이를 승낙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요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계약자가 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금납부 중지기간” 동안 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약자는 업무처리요령 제12조의1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11호 서식] “부금납부중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운용요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계약자가 일정기간 부금을 연체한 경우 또는 제26조 제2항 제1호(부금납부 12회 이상 연체)의 강제해지 사

7) 418건 = 기존 무효처리한 384건 + 추가로 확인된 무효처리 대상 34건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그 연체 사실 또는 계약해지(예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통지는 계약자가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가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하며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요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개월분 이상 연체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시 중앙회는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업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청약서” 등에 따르면 공제계약자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12회 이상 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공제계약자가 부금월액의 감액이나 부금납부 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채 부금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해당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 뒤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공제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결과와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는 2024년 6월 말 기준 공제부금 납부가 12회 이상 연체된 30,060건 / 2,257억 원에 대해 공제계약자가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또는 “부금납부중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공제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공제계약자들이 그동안 감면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다시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최근 6년간 12회 이상 연체된 장기미납자 비율이 낮게는 1.5%에서 높게는 2.86%, 연체 금액 규모는 6개년 평균 2,2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 12회 이상 연체자에 대한 중앙회의 업무처리 방식을 살펴봄과 아울러 중앙회의 업무 처리방식으로 인해 공제 채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12회 이상 연체자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을 확인한 결과, 중앙회는 12회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계약해지 통지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계약 해지 후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⁸⁾에 따라 공제 원리금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데도 공제부금을 연체하지 않은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제외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중앙회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해 공제 채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말 기준 12회 이상 연체된 계약 건수 및 공제금 등 전체 규모(해지 및 미해지 모두 포함)는 67,018건, 2,254억 원인데, 이 중 이미 공제금 지급이 완료된 36,958건의 경우 정당한 공제 원리금으로 1,173억 원 보다 약 85억 원(원금 9억 원, 이자 76억 원) 많은 1,258억 원(원금 1,164억 원, 이자 94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30,060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면 정당한 공제 원금 990억 원보다 약 6억 원 많은 996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 공제대출금 미상환자 관리 미흡

[법령 등 관련 근거]

운용요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제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공제부금 12개월 이상 미납 등 공제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공제대출금 원리금 합계액이 제26조 제2항 제1호(부금납부 12회 이상 연체)의 사유로

8)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 (공제 원금) 납부 월수 1~3회: 80%, 4~6회: 90%, 7회 이상: 100% 지급
- (공제 이자) 납부 월수 1~60회: 이자 미지급, 61~72회: 지급이자의 40%, 73~120회: 지급이자의 50%, 121~180회: 지급이자의 70%, 181~240회: 지급이자의 80%, 241회 이상: 지급이자의 95%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공제대출금 원리금 합계액 > (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예상세액)}한 경우 중앙회는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운용요강 제38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반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자에 대한 공제계약대출금 및 기타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해약환급금 또는 반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공제계약자가 부금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부금 납부 12회 이상 연체 시점에 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공제계약자가 납부한 부금 액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상환 처리하여야 한다.

[검토결과와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는 위 6,614건 / 426억 원 이 중 5건 / 2억 원은 공제계약자가 부금 납부를 12회 이상 연체한 시점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해지하여 대출상환 자금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공제계약자가 그동안 감면받았던 소득공제액을 다시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제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방치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장기간 미상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제부금이 점차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대출금이 공제부금을 역전하게 되어 해당 공제계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향후 중앙회와 해당 공제계약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라. 공제부금 현금 지급 관련

1) 법령을 위반한 현금 지급 부적정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협동조합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수급자가 공제금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때는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결과와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는 “자체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공제계약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반환 청구서”상 계좌번호란에 현금으로 받겠다고 기재하면 아무런 검토도 없이 공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그 처리방식 또한 업무담당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공제계약자(청구자)에게 직접 전달함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은 물론 현금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현금 지급으로 확인된 14,683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3건은 공제계약자가 공제 해지 시 제출한 서류 원본은 존재하나 이를 파일 형식으로 전환하여 공제시스템에 등록해 놓지 않았고, 특히 이 중 6건은 공제계약자가 제출한 서류 원본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파일 형식으로 전환

하여 공제시스템에 등록조차 해 놓지 않아, 해당 건에 대해서는 해지 서류 원본 및 사본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중앙회가 법령에 따라 공제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면 서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공제금 수령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간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공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결국, 위 건에 대해서는 중앙회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기록 외 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사실상 공제금 수령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⁹⁾

2) 현금 지급 과정 업무 관련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소홀

[법령 등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앙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26조에 따르면 중앙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한편, 중앙회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 분임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공제사업 관련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공제

9) 중앙회 인력 다수가 투입되어 몇 주간에 걸쳐 문서고 등을 확인하였으나 서류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해당 공제계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제금 수령 여부를 확인함

계약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공제계약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분실되었을 때에는 분실 경위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계약자들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검토결과와 문제점]

중앙회 G e 및 g d은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A a는 2018.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지부에서 각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임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로 근무하면서, G e은 2021. 1. 1.부터 2024. 1. 31.까지, E d은 2022. 1. 1.부터 2024. 1. 31.까지, B b은 2020. 1. 1.부터 2023. 2. 28.까지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각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임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로 근무하면서, H e은 2021. 1. 1.부터 2023. 2. 28.까지, F e은 2022. 1. 1.부터 2023. 6. 11.까지, C c은 2007. 2.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대구지역본부에서 각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분임담당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로 근무하면서 공제계약자들로부터 공제가입·해지 등 관련 제반 서류(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한 뒤 해당 서류 원본을 중앙회 본부로 이관 처리하였다.

가) A a, B b 및 C c의 경우

그런데 A a, B b 및 C c은 각 지역본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취급자로 근무하면서 공제계약자들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분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실 사실조차 이번 감사 과정에서야 인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취급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위 공제계약자들에게 개인정보 분실 사실을 적시에 알리지 못하여, 중앙회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장기간 무방비 상태로 제3자가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나) g d, E d, F e, G e, H e의 경우

그런데 g d, E d 및 F e은 개인정보보호 분임담당자 자격으로, G e 및 H e은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 자격으로 각 지역본부에 근무하면서 앞서 언급한 “라항 2) 가)”와 같이 공제계약자들이 제출한 개인정보 관련 서류 일체가 분실되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조차 이번 감사 과정에서야 인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분임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임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라항 2) 가)”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2-3. 공제사업 사후관리 분야

마. 공제금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 미흡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협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에 따르면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공제 재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법령을 위반하여 공제금이 지급되는 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결과와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는 위 9,926건 / 458억 원 중 4,521건 / 294억 원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별다른 검토 없이 공제 원금에 이자까지 가산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5,405건 / 164억 원의 경우에는 아직 공제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공제금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소멸시효에 대한 검토 및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법령에 규정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도가 형해화되는 등 공제사업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가항 관련) 중앙회는 공제상담사 온라인홍보 관련 가이드라인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홍보물 등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동 사안 관련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항 관련) 중앙회는 검수 등을 통해 사전심사를 철저히 수행 중이나 중앙회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가입제한업종 검수를 더 철저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가입 제한 업종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항 관련) 중앙회는 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미납자에 대해서도 임의해지보다 장기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② 강제 해지 시 원금 손실, 기타소득세 부과(16.5%),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건보료 급증 등의 피해가 생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부금 납부 독려, 정상 계약 전환, 부금납부중지, 부금 감액 등 장기미납자에 대한 안내를 앞으로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운용요강 제23조 제1항에서는 “중앙회는 계약자가 일정기간 부금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그 연체 사실 또는 계약해지(예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제 또는 부금연체의 해소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경과하면 계약자는 중앙회에 대한 공제계약대출에 관한 일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계약자는 대출금 등 일체의 채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용요강 제26조 제2항 본문에서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의 재량으로 장기미납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중앙회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항 관련) 중앙회는 향후 가입 시 희망자에 한해 가족 등 대리인의 연락처 확보하고, 행복지킴이통장 지급 등을 통해 현금 지급 폐지를 추진함과 아울러 공제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를 스캔하여 전산(공제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만 결재가 가능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항 관련) 중앙회는 ①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경과 시 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을 안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② 은행의 예·적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공제금 지급으로 타 가입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③ 교직원공제회·과기인공제회에서는 법상 부담금반환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나 주기적인 운용현황 고지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회원이 5년 경과 후 청구해도 지급하는 점에서 향후 소멸시효가 경과해도 계약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는 법률의 문언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단기 소멸시효의 취지는 재산 상태 명료성 확보를 통한 정상적인 업무 운용을 위한 것인 점에서 임의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우 소멸시효 이후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교직원공제회 및 과기인공제회의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도록 현황 고지 등 중단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앙회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관련자 의견】

G f을 포함한 업무관련자 8명은 공제계약자에 대한 서류 관리가 미흡·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① (“2항 가”와 관련하여)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홍보와 관련하여 사업 공신력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회 사전승인, 가이드라인 준수 등 공제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2항 나”와 관련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심사와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제에 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입제한업종으로 확인된 공제계약자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함과 아울러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처리된 공제계약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이자를 지급하며(시정요구)

③ (“2항 다”와 관련하여)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 장기연체와 관련하여 연체상황에 대한 사전예고 안내를 강화하고, 기준을 정해 계약 해지하는 등 장기연체 방지 대책을, 이들 중 공제계약대출금 및 기타 채권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지급할 공제금 등과 상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④ (“2항 라”와 관련하여) 앞으로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공제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분실한 업무 처리자들에게는 경고를,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한 업무 관리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개인주의·경고)

아울러 개인정보 분실 관련 피해 공제계약자들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공제계약자가 제출한 서류를 공제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출결의가 가능하도록 전산을 보완하며, 「협동조합법 시행령」의 현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⑤ (“2항 마”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제금이 소멸시효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약관 개정, 사전고지, 시효중단, 시효연장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공제자산운용의 방편으로 공모주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에 따라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 중기부는 중앙회에 공모주 직접투자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를 필히 준수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2014. 9. 2.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중앙회에서 2014년 5월 이후 공모주에 대해 직접투자한 9건, 4,338백만 원은 타법인 출자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중앙회는 위 건 포함하여 이후 공모주 직접투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중앙회는 중앙회가 전산 미비로 부정확하다는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모주 직접투자를 제외하더라도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계속하여 법령상 주무관청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모주 263개 종목(110,785백만 원)에 대하여 직접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 의견】

중앙회는 앞으로 모든 공모주 투자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겠다고 하였다. 다만, 투자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 ① 앞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모주에 직접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기관경고)
- ② 이미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투자되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노란우산공제 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단기자금,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군을 분류하고 국내 혹은 해외자산에 직접투자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중앙회는 공제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회가 직접투자하는 해외채권(일반/구조화)의 경우 일정 절차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규정」(이하 “리스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행기관의 해외신용평가 등급(이하 “해외신용등급”이라 한다)이 “BBB0” 이상인 은행채, 회사채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해외신용등급이 “A+” 이하인 경우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채권 종류, 발행기관, 금액 및 만기별 한도를 설정하는 투자가능종목군(이하 “신용채권 유니버스”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리스크관리요령」(이하 “리스크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및 <별표 2>에서 신용채권유니버스 구성 대상을 “AA+ ~ A0”로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 규정인 리스크관리규정과 리스크관리요령을 연계하여 판단할 경우 해외채권의 경우 신용채권유니버스 신용등급은 “A+ ~ A0” 구간으로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 구성에 적용하는 신용등급은 리스크관리규정 제

12조에 따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해외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회는 리스크관리요령 제11조에 따라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 내 기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종목 편입 및 변경, 투자한도 등을 조정하고 해외신용등급이 “A-”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즉시 때도,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회는 해외채권 직접투자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회사채 발행기관의 해외신용등급이 “A+ ~ A0”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를 구성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이때 적용하는 해외신용등급은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해외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회가 최근 5년간(2020~2024.6월) 직접 투자한 해외채권 중 발행기관이 해외기관인 투자 내역 71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 구성 절차 미이행

해외 신용채권 직접투자시 채권 발행기관의 최저 해외신용등급이 “A+ ~ A0”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를 구성한 후 만기, 금액한도 등을 설정하여 투자를 실시하여야 하나, 총 71건의 투자내역 중 68건은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 구성을 통한 투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성하지 않은 채 투자를 실시하였다.

한편, 중앙회는 해외채권 투자와 달리 국내 채권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채권유니버스를 구성(2024년 상반기 기준 92개 기관)하여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신용평가등급 적용 부적정 및 요건 미충족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

총 71건의 투자 내역 중 56건(78.9%)은 해외신용등급이 아닌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AAA ~ AA")을 적용하여 투자하였으며 최저 해외신용등급을 적용한 건은 15건(21.1%)에 불과하였다.

국내 신용평가등급("AAA ~ AA")을 적용하여 투자한 56건의 투자 적정성 점검을 위해 국내 신용평가등급을 해외신용등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한 결과, 이 중 6건은 투자 결정 당시 해외신용등급이 "A-"에 해당하여 투자 부적격 대상이나 임의로 국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외신용등급을 적용하여 투자한 15건 중 9건도 해외신용등급(최저)이 "A-"에 해당하여 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목으로 확인되었다.

③ 해외 채권투자 사후관리 부실

앞서 ①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회는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를 구성하지 않고 투자를 집행함에 따라, 신용채권유니버스 편입 기업에 대해 연 2회 이상의 정기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중앙회가 투자 중인 71개 해외채권의 현재 기준(2024년 8월) 발행기관의 해외신용등급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15개 종목은 해외신용등급(최저)이 "A-"에 해당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즉시 매도 및 해외 신용채권유니버스 제외 조치를 취하거나 실무협의 회 협의를 통해 신용채권유니버스 유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중앙회는 현 리스크관리규정에서는 국내외 각각의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 반면, 하위규정인 리스크관리요령에서는 국내외 신용등급의 별도 구분 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유관부서와 협의 하에 국내외 각각의 등급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고, 해외채권의 경우 국내 발행사 대비 신용관련 정보 접근이 상대적인 열위에 있어 실적 발표 주기에 맞춰 재무제표, 신용등급, 기타 신용관련 이슈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니버스 구성과 함께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완비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해외 일반채권 직접투자 시 개정된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① 앞으로 해외채권 직접 투자 시 신용채권 유니버스 구성, 해외신용평가 등급 적용, 연 2회 이상 사후관리 등 리스크관리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기관주의)

②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1. 업무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노란우산공제 자산의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단기자금,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군을 분류하고 국내 혹은 해외자산에 직접투자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장지수 및 섹터별 ETF 등에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이하 “자산운용규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르면 주식 직접 운용 시 투자가능종목군(이하 “종목군”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그 종목군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종목군의 신규 편입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이하 “리스크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거쳐 자산운용 담당임원의 결재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ETF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리스크실무협의회를 통해 종목군을 설정하여야 하고, 투자 결정시 의사결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들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종목군에 편입된 종목은 사후 점검을 통해 삭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등 ETF 직접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중앙회는 2022년부터 ETF에 대한 직접투자를 실시해 왔으며, 2024년 6월말 까지 총 64개 종목에 약 5.7조 원을 투자하였다.

① 투자가능종목군 구성 절차 미이행

그러나 중앙회가 투자한 64개 종목 중 사전에 구성된 종목군에 투자한 종목은 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62개 종목(96.9%)은 종목군에 편입하는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종목군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 중 총 11개 종목에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였다. 사전 검토를 통해 종목군을 구성하고 종목군에 편입된 종목에 대해 투자를 실시하였다면 투자 손실 리스크를 보다 감소시키거나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ETF 투자 의사결정 기록 미작성 등 운영 부적정

또한, 금융투자실은 내부 실무회의에서 ETF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ETF 투자종목, 투자규모, 매수·매도 시점 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아 사후 의사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규정」 제27조의 투자가능종목군 구성에 대한 규정은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개별종목 투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고, ETF에 대한 규정은 2022년 제1차 자산운용위원회('22. 3. 31)와 '23년 2분기

투자계획 보고를 통해 마련하였으나 자산운용규정상 개별종목 투자와 ETF 투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ETF 유니버스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유관부서와 협의하에 ETF 투자 유니버스를 확립하였고, ETF 투자 의사결정 기록은 ETF 최초 투자 계획 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감사 진행 이후 ETF 투자의견 및 향후계획을 작성하는 등 앞으로 ETF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자산운용규정 및 절차와 달리 사전에 구성된 투자 종목군을 벗어나 투자하거나, 투자 의사결정 회의록 등 기록·보관을 소홀히하는 일이 없도록 ETF 투자 운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1. 업무 개요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중기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양회”라 한다)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의 조합별 연간 추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천계획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조합이 최근 5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추천한 실적은 평균 332건, 119억 원 수준이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중양회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공공구매요령”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조합으로부터 연간 추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조합별 연간 추천계획서를 최종 확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연간 추천계획서의 준

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3월 말까지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액추천시스템을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합별 회원사의 연간 추천 횟수, 계약금액한도 등 추천계획서를 매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고, 연간 추천계획서를 제출한 조합을 대상으로 최종 조합별 연간 추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기부로 제출해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는 추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도 중앙회가 기준값으로 설정한 추천횟수, 계약금액 한도 등을 부여하여 연간 추천계획을 수립하고 중기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회는 매년 1월에 모든 조합에 ‘조합추천 수의계약 추천한도 제출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조합추천 수의계약을 활용할 조합으로부터 제품별·품목별·업체별 연간 추천 횟수와 계약 금액 한도를 설정한 연간 추천계획서를 총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조합은 신청공문, 총회 의사록, 제품별 추천한도(중앙회 양식)를 제출하고 있으나, 중앙회가 요청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에게도 추천 한도를 부여하였으며,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이 제출한 조합보다 많은 것¹⁰⁾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회는 조합의 총회 개최절차(이사회 개최 사전통지 → 이사회 개최 → 총회 개최 사전통지 → 총회 개최)를 감안시, 공공구매요령에서 정한 기한(3월 말)내 연간 추천계획서를 중기부에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추천계획서 미제출에 대하여 해당 조합에 부여된 추천한도를 제한할 경우, 해당 품목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10) 조합의 연간 추천계획서 제출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천한도 부여 조합수	215	218	208	213
신청서류 제출	27 (12.6%)	48 (22.0%)	57 (27.4%)	58 (27.2%)
신청서류 미제출	188 (87.4%)	170 (78.0%)	151 (72.6%)	155 (72.8%)

수주기회가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 구매요령의 규정과 다르게 관행적·임의적으로 매년 연간 추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에게도 추천한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연간 추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한 조합 수가 정당하게 연간 추천계획서를 제출한 조합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당하게 연간 추천계획서를 제출하여 추천 한도를 부여받은 조합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중앙회는 차기년도 추천한도 설정 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합들이 추천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미제출 조합에는 추천 한도를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기부 관련 부서와 추천 한도 설정과 관련해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①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위탁 운영하면서 연간 추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에게 추천 한도를 부여하는 등으로 조합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기관경고)

② 홍보 활동 강화, 연간 추천계획서 제출 시기 조정 등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이하 “중기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대해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적격조합은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조합이 적격조합으로 확인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적격조합의 요건을 검토하여 중기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적격조합의 운영상황을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중기부에 제출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기부에 참여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중기부는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에 대한 확인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였으며, 중앙회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중소기업 비중 50% 이상 등 적격조합 확인 요건을 검토하여 중기부에 제출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공공구매요령”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하며, 적격조합 확인서에는 해당 중기간 경

쟁 제품명 및 세부품명을 명시하여 적격조합이 입찰 또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세부품명을 규정하고 있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적격조합은 공공구매요령 제20조에 따라 소속 조합원사 중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적격조합을 통해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조합원사는 같은 경쟁입찰에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중앙회는 공공구매요령 제18조에 따라 적격조합의 직접생산 조합원사 현황, 연간 교육 이수 실적, 조합의 전년도 공공시장 매출액 등 운영상황을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매년 4월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기부는 적격조합의 운영상황을 토대로 적격조합 자격유지 여부, 확인 취소 및 정지 사항의 유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개사만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참여자격 미달로 적격조합의 해당 제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는 2021년부터 2023년의 적격조합 운영 상황을 점검하면서 적격조합의 조합원사 중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개사만 있는 제품을 확인하였는데 적격조합 해당 제품에서 제외하지 않고 중기부에 적격조합 해당 제품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앙회가 2023년 적격조합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q협동조합의 쓰레기통 등 4개 적격조합의 10개 제품은 2022년부터 2년간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개사만 존재하여 적격조합 해당 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적격조합 해당 제품으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적격조합 해당 제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제품이 적격조합으로 다수 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여 납품한 사례¹¹⁾가 확인되었다.

적격조합의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개사만 존재하는 이유는 적격조합 확인 당시에는 2개사 이상의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존재하였으나, 일부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유효기간(2년) 만료, 조합 탈퇴,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것이며, 중앙회는 적격조합의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격조합 해당 제품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개사인 적격조합 제품이 적격조합 해당 제품으로 유지되고, 일부는 적격조합 확인제도를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여 납품을 하였는데 이는 적격조합이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적격조합 확인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적격조합내 다수 조합원사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합원사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중앙회는 차기년도 적격조합 사후관리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수가 1개 이하인 세부품목에 대하여는 부적격으로 검토하여 중기부에 제출하고, 추후 요건 충족시 조합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조합 해당 제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적격조합 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여

11)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개인 적격조합 제품 실제 납품 사례

연도	적격조합명	세부품명	납품실적(원)
2021	@@@@협동조합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1,073,285,260
2023	@@협동조합	콘크리트경계블록	374,899,160
	@@@@@협동조합	속빈콘크리트블록	274,378,370

및 계약 관련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일종의 행정업무 대행인 점을 감안해 향후 제도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중기부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중기 간 경쟁입찰 참여 적격조합 요건에 맞지 않는 제품이 적격조합 해당 제품으로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적격조합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1. 업무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012년 9월 미국 현지에 법인(이하 “LA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등을 운영하였다.

한편, 중앙회는 LA 법인 운영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2018. 3. 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이 종료되는 등 재원 조달이 곤란해지자 같은 해 8월 전시판매장을 폐장한 뒤, 다음 해 6월에는 법인 파견자를 철수시켰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앙회 「예산집행지침」 기본원칙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LA 법인이 아무런 역할 없이 존속되고 있다면, 이를 폐쇄하거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는 2019년 6월 LA 법인 직원들이 철수하여 해당 법인이 아무런 역할 없이 존속되고 있는데도 2024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을 폐쇄하거나 재개하지 않고 중앙회 예산으로 비품보관료, 회계용역비 등 비용을 지출하여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100만 원의 중앙회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앙회는 2019년 6월 LA 법인 철수 이후 내규를 개정하는 등 법인운영 재개를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입국제한조치 시행(‘21.2.15.~‘22.6.8.) 등으로 의사결정이 연기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법인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금년 내 비품을 폐기해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LA 법인 재개 또는 폐쇄 여부에 대해서도 대외환경 변화 및 정책 수요에 맞춰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LA 법인이 아무런 역할 없이 예산이 투입·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법인의 폐쇄 또는 재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상근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m e 등 7명의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앙회 「급여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임원에게 산정 퇴직금의 50%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한편, 「제규정관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과 그 밖의 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절차 등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이나 기준으로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제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임원의 임명과 퇴직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가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 내규상 퇴직금의 50% 이내에서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퇴직금 가산 지급 대상이나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금 가산 지급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중앙회(인사팀)는 n e 등 임원 7명 중 w 감사를 제외하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가 하면, 회장 보고 자료인 가산 지급 검토안을 작성하면서도 가산 비율과 금액에 대한 예시가 개인별로 2단계(15%, 20%)부터 3단계(20%, 30%, 50%)까지

각각 다르거나, 가산 사유(주요성과) 또한 동일·유사하게 작성한 후 이를 회장에
게 보고하는 등 퇴직금 가산 지급 비율 결정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관계기관 의견】

중앙회는 퇴직금 가급은 임원의 공적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경영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
으나 향후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제도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제규정관리지침」 등에 따라 퇴직금 가산
지급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업무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중앙회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출연¹²⁾하여 임직원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도 기금의 재원은 직전 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중앙회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회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중앙회는 2023년도 및 2024년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인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각각 3,400억 원, 287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앙회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을

1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금액(백만 원)	1,200	1,200	1,200	1,200	1,200	1,500	7,500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는 이를 예년 대비 25% 증액(12억 원→15억 원)하여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중앙회는 「근로복지기본법」은 임의규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출연을 결정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종전 운영해 온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직원 사기 저하 우려 등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출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요건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세전 순이익 발생을 명확히 전제하고 있고, 특히 내규인 「중소기업중앙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도 출연금은 직전 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중앙회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중앙회는 매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서 예산의 적정한 집행 의무가 있는데도 2022년도 및 2023년도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2023년도 및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행위는 예산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에 반할뿐더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알리오 기준으로 '19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실이 있는 기관 모두가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출연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직원 사기 저하 우려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였다는 중앙회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1. 업무 개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의 공연 등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앙회는 「예산회계규약」 제61조 제1항 및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은 일반경쟁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산회계규약」 제65조 제2호 자목 및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6조 제2호 자목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등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클래식 음악공연이나 법률자문 등의 용역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중앙회는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6조 제2호 자목을 근거로 ‘클래식이나 공연은 각 연주단 고유의 음악성이나 특색이 있다’라는 사유로 2019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a오케스트라와 총 15건의 수의계약(745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앙회는 2024. 3. 27. 개인사업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제3 내지 6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계약(49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위의 요령 같은 조항을 근거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유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그 결과 중앙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계약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중앙회는 a오케스트라와의 계약은 클래식이나 공연은 각 연주단 고유의 음악성이나 특색이 있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등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6조 제2호 자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2호 본문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각 연주단 고유의 음악성이나 특색이 있다는 사정이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6조 제2호 본문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조 같은 호 자목의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이거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등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중앙회는 헌법소원 관련 ‘법률자문계약’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등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비교 견적을 받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헌법소원을 위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이거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등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회계규약」 및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IV. 처분 요약

1. 처분요구사항(총괄)

□ 주의·경고 19건(개인 12, 기관 7), 시정 1건, 통보 8건

구분	건명	처분요구		조치 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노란우산공제 관리 미흡	통보(4) 시정(1)	경고(3) 주의(5)	'25.2월	
2	공모주 직접투자 부적절	경고(1) 통보(1)	-	'25.2월	
3	해외채권 직접투자 운영 및 사후관리 부적절	주의(1)	주의(4)	'25.2월	
4	ETF 주식 투자·관리 부적절	주의(1)	-	'25.2월	
5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운영 미흡	경고(1) 통보(1)	-	'25.2월	
6	중기간 경쟁입찰 적격조합 사후관리 부적절	주의(1)	-	'25.2월	
7	해외사무소 방치 부적절	통보(1)	-	'25.2월	
8	퇴직금 가산 지급 관련 규정 부재	통보(1)	-	'25.2월	
9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부적절	주의(1)	-	'25.2월	
10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절	주의(1)	-	'25.2월	

2. 개인 처분 명세

□ 경고 3명, 주의 9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지적 내용
				주의	경고	징계	
1		a	A		O		노란우산공제 운용 관련
2		b	B		O		노란우산공제 운용 관련
3		c	C		O		노란우산공제 운용 관련
4		d	D	O			노란우산공제 운용 관련
5		d	E	O			노란우산공제 운용 관련
6		e	F	O			노란우산공제 운용 관련
7		e	G	O			노란우산공제 운용 관련
8		e	H	O			노란우산공제 운용 관련
9		f	I	O			해외채권 직접투자 관련
10		e	J	O			해외채권 직접투자 관련
11		f	K	O			해외채권 직접투자 관련
12		g	L	O			해외채권 직접투자 관련